

27.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 사건

<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원, 판례집 14-2, 170>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의사로서 2000. 5. 30. 자신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자신의 배우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혼금을 청구인과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 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종로세무서장에게 하였다. 그러나 종로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 이 사건의 계속중에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삼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 더욱 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 때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연간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합산전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세액이 더 증가하게 되어, 합산대상소득을 가진 부부는 자산소득이 개인과세되는 독신자 또는 혼인하지 않은 부부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라는 혼인의 구성요건을 근거로 혼인한 부부에게 더 높은 조세를 부과하여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

3) 우선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 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만,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이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자산소득까지 다른 한쪽의 배우자(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개인이 획득한 소득을 소비하는 형태는 개인마다 다양할 것인데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 절약가능성을 담세력 내지 급부능력과 결부시켜 조세의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군다나 부부의 가계공동생활에서의 절약가능성은 소득세법상 담세력의 요소로서 고려될 사항이 전혀 아니다.

4) 또한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

5) 그리고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와 같이 순수한 조세법 규정에서 조세부과를 혼인관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가족법 등에서 혼인관계를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세법 체계상 사물의 본성에 어긋난다.

6)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은 상당히 큰데 비하여,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소득재분배효과를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은 기대하는 만큼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양 자 간에는 균형적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7)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통하여 자산소득합산과세

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사후경과

이 사건 결정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규범적인 내용이 특히 소득세법 영역에서 준수되어야 하고, 소득세 부과에서 혼인한 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이 결정으로 인하여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부유층은 많은 혜택을 받은 반면에 봉급생활자 및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여 세부담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서울경제신문, 2002. 8. 31. 2면 사설; 한겨레신문, 2002. 8. 31. 4면 사설).

입법자는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소득세법 제61조를 폐지하고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의 당해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를 개정하여 부부합산 과표를 종전의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하였다.